
1381 해외인증자료



작성일자 2025.03.31. 기준,
무단 도용 배포 금지

(문의)

3가지 통신(LARN8, LTE9, IMT9)과 리튬이온배터리가 들어간 전기자전거
미국 수출 시 주별 규제 및 규제 동향

아래에는 해외 원문 문서를 번역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1381인증·표준정보센터는 원칙적으로 해외원문 문서의 번역서비스를 하지 않으며, 간혹 경우에 따라 일부 내용을 번역할 경우에도 그 번역의 완전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서 번역은 업체의 몫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문서 내 링크 또는 문서 하단 ※ 자료 출처의 링크를 통해 원문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품에 해당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제품 사양을 근거로 업체에서 직접 판단하시거나 관련 기관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저희 1381인증·표준정보센터는 국내/해외의 법률적 유권해석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

▶ 주별 자전거 규제 개요

해외인증 자료실 “미국으로 전기자전거/E스쿠터/E바이크 수출시 규제” 자료에서 앞서 안내드린 규정은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C의 연방규정에 따라 정의되는 자전거에 대해 안내드렸습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은 각 기관별 연방규정과 주별 규제가 별도로 있습니다.

각 주별로 전기자전거를 분류하고 규제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판매하려는 주별 규제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부 주에서는 전기 자전거에 대한 엄격한 법률이 있는 반면, 다른 주에서는 전자 자전거를 특정 차량으로 분류하지 않고, 어떻게 규제하는지도 불분명합니다.

보통 전기자전거(eBikes)를 일반자전거(traditional bikes), 모페드(mopeds), 혹은 스쿠터(scooters)로 분류하는데 따라 관련규제가 상이해집니다. 모페드나 스쿠터의 경우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자동차 규제를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별 규제(State legislation)는 이러한 전기자전거(eBikes)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정하게 되는데 여전히 각 주별로 그 정의가 상이합니다.

기존 자전거와 자동차가 아닌 별도의 Ebike 정의와 분류를 두는 규제는 미국 전역에서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39개 주에서는 전기 자전거를 세 가지 표준 등급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Arizona, Arkansas, California, Colorado, Connecticut, Florida, Georgia, Idaho, Illinois, Indiana, Maine, Maryland, Michigan, North Dakota, Missouri, New Mexico, Minnesota, Idaho, Nebraska, Kansas, Alabama, Massachusetts, Mississippi, New Hampshire, Nevada, New Jersey, Delaware, New Jersey, Ohio, Oklahoma, South Dakota, Tennessee, Texas, Utah, Virginia, Washington, West Virginia, Wisconsin, and Wyoming.

18개 주에서는 고유한 정의를 사용하여 전자 자전거를 분류합니다.

Hawaii, Oregon, Montana, Kentucky, North Carolina, South Carolina, Washington DC, and Rhode Island.

현재 11개 주 또는 미국령 지역(territories)에서는 전자자전거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Alaska, Puerto Rico, U.S Virgin Islands, Guam, American Samoa, and the Northern Mariana Islands.

*출처: QuietKat > USA ELECTRIC BIKE REGULATION GUIDE

https://quietkat.com/pages/united-states-electric-bike-regulations-guide?srsltid=AfmBOoo7rpBD-RtBj2ps3tWw_HKlv6SQNCcXyomDnt8j27B0kuoqzxm
EBike definitions & classifications by state 확인

*참고

<https://www.peopleforbikes.org/electric-bikes/state-laws>

<https://www.peopleforbikes.org/topics/electric-bikes>

<https://www.peopleforbikes.org/electric-bikes/state-laws>

<https://www.peopleforbikes.org/electric-bikes/policies-and-laws>

* 참고: UL 자전거규제

<https://letrigo.com/blogs/knowledge/ul-certification-electric-bikes>

▶ 미국 자전거 규제 동향

2019년 8월 29일 데이비드 번하트 미국 내무장관이 서명한 장관령 3376호에 따라 내무부(DOI) 산하 각 부서가 전기 자전거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전기 자전거를 자동차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자전거는 3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법안이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Secretary's Order 3376

https://www.doi.gov/sites/doi.gov/files/elips/documents/so_3376_-_increasing_recreational_opportunities_through_the_use_of_electric_bikes_-_508_0.pdf

이후, 해당 장관령을 뒷받침하는 국립공원관리청(NPS) 국립공원 시스템 내 전자 자전거 사용을 규제하는 최종 규정이 2020년 12월 2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전기 자전거"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관리자가 기존 자전거도 허용되는 도로와 산책로에서 필요한 경우 전자 자전거를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 국립공원청, 국토관리국,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국, 국유림국 등에서 비동력 수송 수단용 도로나 길에서 전기자전거를 사용할 수 있는 지 등의 관리를 하게 됩니다.

* 기관별 규제 <https://www.peopleforbikes.org/electric-bikes/federal-e-bike-rulemaking>

▶ 유의사항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국가 강제인증보다는 각종 자율/민간 인증이 통용되는 형태로 사전인증제도보다는 리콜/처벌 등의 사후 엄격한 관리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품의 안전과 품질에 대해 보증할 책임은 제조자/수입업자에 두고 있습니다.

▶ 주별규제

또한 미국은 50개 주(州)로 이루어진 국가로 연방법과 주법이 공존하고 있으며 주별로 각종 민간기관의 실험·연구 등으로 기준화 및 규격화된 규격을 채택하여 강제하거나 주별 규제를 따로 두고 있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민간/자율인증이더라도 지역에 따라 강제인증과 같이 통용될 수 있으며 해당품목의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업계 내 강제처럼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주마다 규제여부 및 내용이 상이하므로 주별 규제 및 임의인증 적용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이 경우 가장 정확한 방법은 현지 바이어/수입업체를 통해 현지에서 요구되는 인증이나 규제사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희 1381인증표준정보센터는 국가차원의 규제에 대해서만 대응이 가능하며, 주별 규제는 저희 1381인증표준정보센터의 업무 대응 범위를 벗어나므로 해당 건에 대해서는 직접 현지 수입업체 등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례로 캘리포니아는 환경규제인 The Proposition 65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물질 자체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특정물질을 사용한 제품에 대하여 경고라벨을 부착하도록 하는 규제입니다.

예) OEHHA > Proposition 65

<https://oehha.ca.gov/proposition-65>

OEHHA > The Proposition 65 List

<https://oehha.ca.gov/proposition-65/proposition-65-list>

TUV SUD > California Proposition 65 > 캘리포니아 법령 65의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

<https://www.tuv-sud.kr/kr-kr/activity/testing-product-certification/california-proposition-65>

문의처

단, 위 내용은 인터넷 상에서 무료로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검색한 결과로써 최신 현지 정보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미국 현지의 수입업체 또는 관련인증기관, 현지 KOTRA 무역관, 컨설팅기관 등의 다양한 루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지 동향이나 인증 신뢰도, 소비자 선호도 같은 최신 현지정보는 해당지역 업계 및 소비자에게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현지 바이어/수입업자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하며 KOTRA 현지무역관에 수출관련 무역정보 및 시장정보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KOTRA 북미지역본부: <http://www.kotra.or.kr/KBC/northamerica/KTMIUI010M.html>

뉴욕무역관(미국) / 달라스무역관(미국) / 디트로이트무역관(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미국) / 마이애미무역관(미국) / 시카고무역관(미국) / 실리콘밸리무역관(미국) / 워싱턴무역관(미국)

-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괄 관할)

<https://www.kotra.or.kr/losangeles/index.do>

또한 KOTRA 홈페이지의 문의/상담 메뉴를 통해 상세 내용에 대해 글로벌지역전문가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글로벌지역전문가의 답변이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답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이용 방법: KOTRA 홈페이지(회원 가입 필요) ⇒ '문의·상담' 메뉴 ⇒ 전화, 챗봇, 온라인 상담 선택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6014>

▶ 한국무역협회 Trade Pro 무역애로상담 1566-5114

<https://kita.net/tradePro/tradeProMain/tradeProMain.do>

지원 사업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중소기업의 경우, 국내 유관기관의 각종 해외인증비용 지원 사업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mes.go.kr/exportcenter/>

- 2025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103330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https://www.smes.go.kr/globalcerti/main.do>

: 20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트랙 1차 / 패스트트랙(2월~8월) 참여기업 모집공고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패스트트랙(상시모집)'과 '일반트랙(연 3회 모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부터 별도로 공고

<https://www.smes.go.kr/globalcerti/info/ktrInfo.do?key=9093>

- 사업명 : 20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전년도 직접 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

1 일반트랙 1차 (230개사 내외, *모집 규모 변동 가능)

- 지원내용 : 541개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50% ~ 70% 지원
*지원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인증도 '비공고 규격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한도 내 지원(일반-패스트트랙 합산)

| 지원건수 | 기업당 지원한도 | 지원비율(전년도 매출액 기준) | | | 인증분야별 개별한도 |
|-------|----------|------------------|----------|----------|------------|
| | | 100억원 미만 | 3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 |
| 최대 4건 | 연간 1억원 | 70% | 60% | 50% | *공고 참조 |

*최대건수(4건, 일반-패스트트랙 합산)를 신청했음에도 신청금액((예상)협약금액) 합이 3,500만원 미만일 경우, 3,500만원 한도 내에서 4건을 초과하여 지원건수 제한 없이 추가 신청 가능

- 일반트랙 1차 모집 기간 : 25년 2월 24일(월) 09:00 ~ 3월 28일(금) 18:00까지

- 대상 인증 : 국가별 일반트랙 해외규격 인증 지원 대상(*공고 참조)
*공고 : <https://www.smes.go.kr/globalcerti/info/ktrInfo.do?key=9093>

2 패스트트랙 (연간 500개사 내외, 상시모집, *모집 규모 변동 가능)

- 지원내용 : 8개 해외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50%~70% 지원

<패스트트랙 지원대상 인증 (8종)>

| | | | |
|----|---------------------|-------------------|-------------|
| 미국 | FCC(전기전자) | FDA(의료기기 class 1) | FDA(화장품 등록) |
| 유럽 | CE(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 | CPNP(화장품) |
| 국제 | HALAL(식품, 화장품) | | IECEE(전기전자) |
| 일본 | PSE(전기전자) | | |

단, 위 인증에 해당하더라도 고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건당 3,000만원 이상 소요), 일반트랙(고비용인증)으로 신청

- * 상기 인증(8종)이 아닌 해외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일반트랙"으로 신청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한도 내 지원(일반-패스트트랙 합산)

| 지원건수 | 기업당 지원한도 | 지원비율(전년도 매출액 기준) | | | 인증분야별 개별한도 |
|-------|----------|------------------|----------|----------|------------|
| | | 100억원 미만 | 3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 |
| 최대 4건 | 연간 1억원 | 70% | 60% | 50% | *공고 참조 |

*최대건수(4건, 일반-패스트트랙 합산)를 신청했음에도 신청금액((예상)협약금액) 합이 3,500만원 미만일 경우, 3,500만원 한도 내에서 4건을 초과하여 지원 건수 제한 없이 추가 신청 가능

- ▶ 인증을 획득한 참여기업의 실제 인증획득 소요 비용에 지원비율을 적용한 금액과 “패스트트랙 인증분 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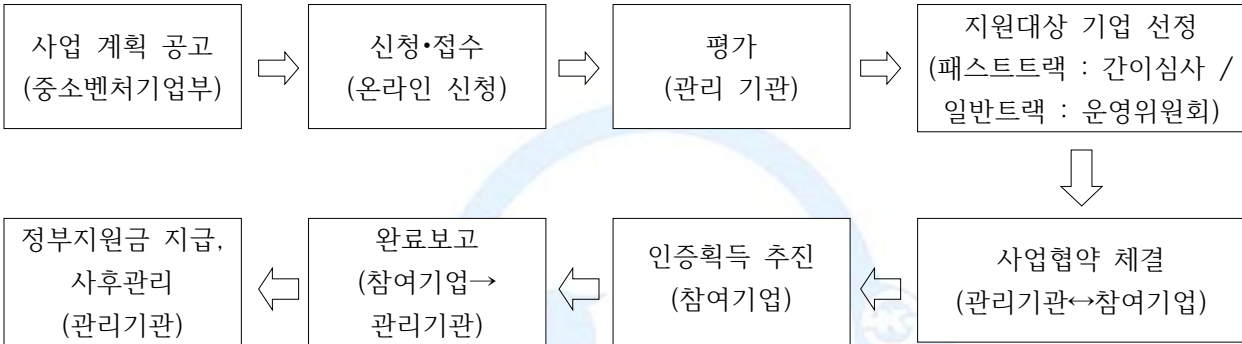
- 패스트트랙 모집 기간 : 25년 2월 24일(월) 09:00 ~ 8월 29일(금) 18:00까지(상시모집)

*예산 조기 소진 시 모집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https://www.smes.go.kr/globalcerti> → 회원가입 → 로그인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사업신청 → [패스트트랙/일반트랙] 구분 신청

- 평가·선정 및 지원 등



▶ 문의처

| 관리기관 | 전화번호 | FAX | 주소 |
|-----------------------------|----------------|-------------|---|
|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 | 02)2164-0173~8 | 02)507-8118 | (13810) 경기 과천시 교육원로 98, 본관동 303호 (수출인증지원센터) |

※ 각 시도별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프로그램도 있으니 해당 지역의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마당 비즈인포 > 지원사업 공고 > 수출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list.do>

- 기업마당 비즈인포 > [충남] 2025년 수출입보험료 및 바이어 신용조사 지원 사업 공고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105277

- 기업마당 비즈인포 > [경기] 2025년 수출바우처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105204

※ 해외조달정보 관련 문의

- 해외조달정보센터

<https://globalkoreamarket.go.kr:8843/gpass/index.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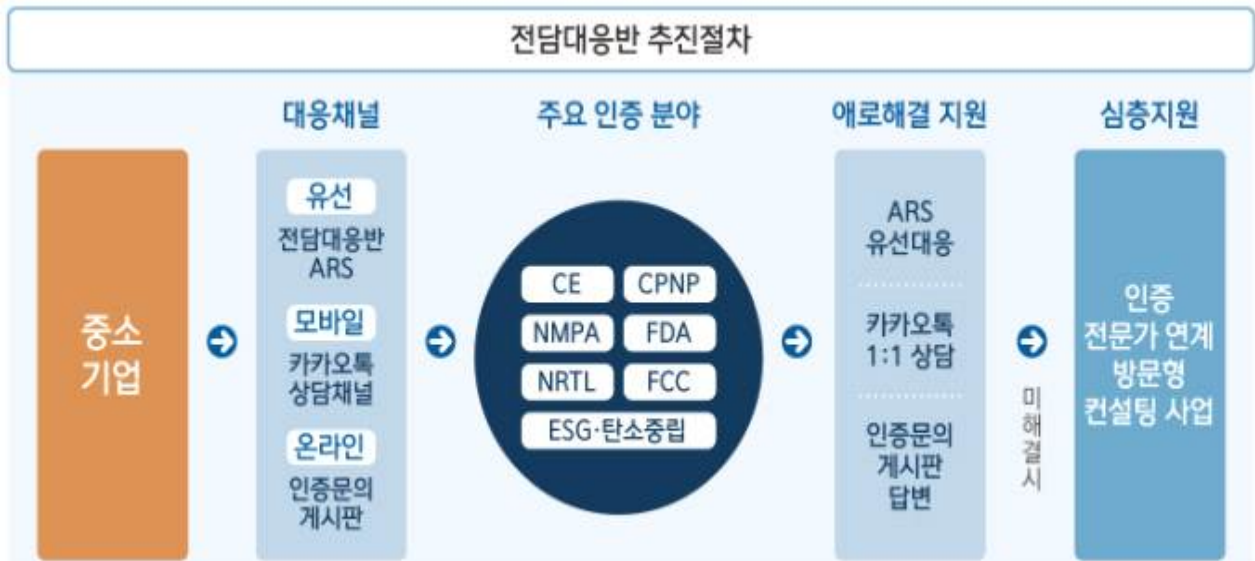
- 해외조달정보센터 > 해외조달정보 > 해외입찰정보

<https://globalkoreamarket.go.kr:8843/bbs/selectBoardList.do?boardId=GPASS004>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전담대응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요 인증분야(CE, NMPA, FDA, CPNP, NRTL, FCC, IECEE, PSE 및 ESG·탄소중립 분야)에 대한 전담대응반을 설치하여 유선 · 모바일 · 온라인 등을 통해 상시 문의사항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해외시장 진출(예정) 중소기업
2. 지원내용 : 주요 인증 분야 (유럽 CE, CPNP, 중국 NMPA, 미국 FDA, NRTL, FCC, IECEE, PSE 및 ESG·탄소중립)에 대한 문의 사항 상담 및 교육 지원
3. 상담절차 : 상담 채널 (유선/모바일/온라인) → 주요 인증 분야 문의 → 애로 해결 지원 (유선/1:1상담/게시판 답변)



4. 문의처
 - 유선 ARS 대표번호 : 1577-9911
 - 모바일 카카오톡 채널 검색 : 해외규격인증 전담대응반
 - 온라인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 전담대응반 (<https://www.smes.go.kr/globalcerti/user/exclusiveCharge/exclusiveChargeQnaList.do>)

5. 운영방법
 - 관리기관 내 대응 채널(유선-ARS, 모바일-카카오톡 채널, 온라인-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상시 애로 접수·상담 운영
 - 미 해결시 방문형 컨설팅과 연계하여 인증전문가 현장 방문을 통한 심층 지원
 - 중소기업 인증 담당자의 인증획득 성공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인증 교육 실시

※ 주 의 !

1381인증표준콜센터는 해외원문문서의 번역 서비스를 하지 않으며, 간혹 경우에 따라 일부 내용을 번역할 경우에도 그 번역의 완전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서 번역은 업체의 몫입니다. 상기 안내 사항은 각 항목 하단에 링크된 참고와 출처 페이지의 일부 내용을 발췌, 번역한 것으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아래의 자료 참고, 출처 링크에서 원문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자료는 온라인 정보에 근거하여 정리한 내용으로 귀사에서 본 자료를 활용할 시 정확한 사실 여부를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및 소요기간은 귀사제품에 적용되는 시험항목, 시험기관, 귀사의 관련서류제출 및 대응 속도에 따라 변수가 있는 사안이므로 해당 인증을 진행하는 인증기관/시험기관의 실무자와 협의하여야합니다. 귀사 제품의 사양과 함께 해당 인증기관에 연락하여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닌 단순 참고자료이므로 각종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효력이 없습니다. 1381콜센터에서 제공한 정보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우리 센터에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이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자료는 무단 수정/배포 불가합니다.

